
*
* 중업원퇴직적립보험 약관 *
*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약관

이 보험은 생명보험회사가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보험 계약을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입단체와 생명보험회사간의 약관 및 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자가 발생하였을 때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속히 지급 (재해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제 1급의 장해시에는 재해보상보험금도 지급) 하고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請約) 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諾) 으로 이루어 집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撤回)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 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때로부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제 2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

(1) 이 약관에서 "단체" 라 함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공공기업체, 조합 등에 소속된 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직제, 직종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구분된 집단의 일부

에 대하여는 회사가 인정하는 단체에 한합니다.

(2) 이 약관에서 "피보험단체"라 함은 단체에 소속한 피보험자 및 단체에 소속되어 퇴직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3) 이 계약 체결시에 있어서 대상단체의 인원수는 16인이상 이어야 하며 피보험단체의 인원수는 5인이상 이어야 합니다.

제 3조 (계약자의 자격)

이 계약의 계약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 법안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
2.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
3.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자

제 4조 (피보험자의 자격)

피보험자가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인사 규정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장래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 5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6조 (협정서의 내용 및 변경)

(1) 계약협정서 (이하 "협정서" 라 합니다) 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체결시에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1. 계약협정의 목적
2.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결정
3. 계약일
4. 보험료의 납입
5. 사업비
6. 보험금의 결정기준
7.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8. 확정배당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9호의 사항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제 2호, 제 3호, 제 4호, 제 6호 및 제 9호는 계약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피보험자의 추가 가입)

계약자는 새로이 피보험자가 될 자격을 갖게 된 자 또는 이미 피보험자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가입하지 아니한 자중 이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매년 계약해당일 또는 정산일에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단체에 추가 가입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제 8조 (계약의 효력)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

판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2) 제 7조에 정한 바에 의한 추가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추가 가입일을 이 계약의 계약일로 합니다.

(3) 회사가 청약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4)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제 9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금 및 재해보장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분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 (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 (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협정서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퇴직하였을 때 : 퇴직보험금을 지급
2. 보험기간중 별표 1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 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 (失踪宣告) 가 있거나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였거나, 별표 2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보장보험금을 지급

(2)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3)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 제 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배당금의 지급)

(1) 회사는 협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2) 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1조 (재해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재해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보장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재해보장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2) 제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항 제 1호 및 제 4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재해보장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에는 얼마 납입한 재해보장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재해보장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재해보장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13조 (보험료)

(1) 이 계약의 보험료는 본조 제 2항 내지 제 4항에 정하는 보험료와 제 6조의 협의 내용에 표시된 책임준비금의 적립증가로 인한 보험료로 구성합니다.

(2) 이 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및 각 보험료 납입기일마다 납입할 기본보험료 (퇴직보험료 및 재해보장보험료)는 제 6조의 협의에 따라서 계약자와 회사의 사전에 각 피보험자별로 계산한 보험료율에 의하여 계산된 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제 6조의 협의에 따라 계약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 보험의 피보험자와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과거 근무체무에 대한 보험료 (이하 "조정보험료"라 합니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제 2항 이외의 퇴직보험 가입금액의 변경등 제 2항의 기본보험료 계산기초 변경 사유로 제 6조의 협의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제 2항의 기본보험료를 변경된 내용에 따라 책임준비금도 다시 계산합니다.

(4) 제 2항 및 제 3항의 경우 계산기초의 변경 여부는 매년 계약해당일에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단체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고 계산기초 변경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15조에 의한 정산시에 이를 포함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

(1)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매년 계약해당일 또는 협정서에 정하는 날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제13조 제 3항의 경우에 추가로 납입할 보험료는 다음 보험료 납입일 또는 그 이전에 협정서에 정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가 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 1항의 보험료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제15조 (정산)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회사가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 책임준비금 초과액 및 계약자배당금은 제14조 제 1항의 정하는 날에 서로 상계하여 정산합니다.

제16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 9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7조 (필요사항의 통지)

(1) 계약자는 보험료 산출 및 보험가입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 1항의 통지를 회사가 받기 전에 회사가 최후로 알고 있는 내용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통지를 지체한 책임을 지는 것

으로 합니다.

제1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1) 제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이하 "유예기간 (猶豫期間)"이라 합니다) 으로 합니다.

(2)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그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하여 협성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협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며, 협의 내용의 일부 변경은 납입 기일에 소급(溯及)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제 2항의 경우 확정배당금 및 책임준비금으로 제해보장보험료를 충당하며, 확정배당금 및 책임준비금이 제해보장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가 정산된 경우에는 이를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5) 계약자는 제 2항에 의한 변경후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변경된 계약의 원계약으로의 환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환원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제 6조의 협의 내용을 변경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1)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청구서 (회사양식)
2. 직장대표자 발행의 퇴직증명서 및 퇴직금 계산서 (퇴직의 경우)
3.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사망,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의 경우)
4. 수익자의 주민등록증 제시 (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5.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해약의 경우)

(2) 회사는 제 1항의 서류중 그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그 이외의 서류를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보험금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9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사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3)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4)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에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21조 (근속년수의 계산)

피보험자의 근속년수의 계산은 계약단체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릅니다.

제21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제22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1) 계약자 (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9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0조에 규정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 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정기에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23조 (계약의 승계)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 3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계약자) 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하여 이 계약의 효력에는 하등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단체의 조직변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소속 종업원 전원이 퇴직과 동시에 새로운 계약자의 종업원으로 재임용되었을 때에는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재직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24조 (계약의 해지)

(1)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사업장, 직책, 직종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일부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을 해지(解止) 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체의 인원이 회사가 정한 수에 미달되고 다음 계약해당일까지 보충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6조 (피보험자의 탈퇴)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속중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2)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킨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협정서 및 피보험자의 명부)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협정서 및 피보험자 명부 각 1통을 교부하며, 추가 가입시에는 피보험자 명부를 추가 교부 또는 갱정합니다.

제28조 (필요 사항의 보고)

(1) 계약자는 계약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회한 경우 또는 이것에 관한 장부 기타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고하거나 열람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계약후 보험료 적립 및 그 운영상황에 관하여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

제2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등을 해 드립니다.

제32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1.1 시행) 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철도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 820 ~ E 825
4. 기타도로교통기관사고	E 826 ~ E 829
5. 수상교통기관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E 840 ~ E 845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케이블카, 곤돌라 등)	E 846 ~ 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의용약 또는 약물첨속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E 850 ~ E 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001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E 860 ~ E 869
10. 의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 870 ~ E 876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1. 불의의 추락	E 880 ~ E 888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 ~ E 899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체온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E 900 ~ E 909 (276.5)
14. 익수, 질식사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는 제외한다.	E 910 ~ E 915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 916 ~ E 928 (E 927)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 제제에 의한 사고	E 930 ~ E 949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60 ~ E 969
18. 법적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E 970 ~ E 978 (E 978)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E 980 ~ E 989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E 990 ~ E 999
21. 전염병예방법 제 2조 제 1항 제 1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 2)

장애등급분류표

등·급	신 체 장애
제 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4.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5.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6.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7.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8.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9.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장애등급분류해설)

- "평생간호" :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시력을 잃은 것"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ㄱ, ㅋ, ㆁ),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ㅇ, ㆁ), 후두음(ㅇ, ㅎ) 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 씹거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써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